

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01. 9. 12(수)
교육사회전문위원

□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.

□ 2001년 9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충청북도 학원의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

-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
- 기존의 「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이 개인 과외 교육을 신고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「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」로 변경·개정(2001. 4. 7 공포)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 - 조례의 명칭을 「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로,
 - 조례의 목적 중 「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「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」로 각각 변경하고
 - 개인과외 교습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 방법 등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

- 학원의 시설규모의 내용중 입시·검정란을 입시·검정·보충 학습으로 하고,
 -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 과정에 초등학교 수강이 가능하게 하여 동 교습과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,
 -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60m²이상으로 하며,
 - 실험·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중 자동차 부분을 삭제하는 등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